

# 인문사회연구소 운영규정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 (명칭)

본 연구소는 해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부설 인문사회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한다.

### 제2조 (목적)

연구소는 인문사회분야의 소속 연구원들의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대학 내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, 각종 연구 수행과 출판을 통하여 관련 학문을 발전시켜 본교의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3조 (소재지)

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.

### 제4조 (사업)

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인문사회분야에 관련된 학술 연구 정보를 수집과 분석, 출판, 배포한다.
- ② 국내외의 인문사회 관련 학술연구기관과 학술 정보를 교환한다.
- ③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논문집(가칭 인문사회 연구)를 발행한다.
- ④ 인문사회에 관련된 각종 연구활동과 학술 행사를 개최한다.
- ⑤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산학협력센터에 제출한다.
- ⑥ 지역사회와 연계된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과제를 수행한다.
- ⑦ 외부기관에서 위탁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.
- ⑧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.

## 제2장 조 직

### 제5조 (편성)

연구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소에는 연구소장, 운영위원회, 어문학연구부, 사회과학연구부, 지역사회연구부, 예술분야연구부를 둘 수 있다.

#### 제6조 (연구소장)

- ① 연구소의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.
-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#### 제7조 (운영위원회)

-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- ③ 위원은 연구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④ 위원은 소장과 각 연구부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.
-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한다.
- ⑥ 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며 회의준비,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-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1. 연구소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  2. 연구소의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
  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4. 교내 연구 과제의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
  5. 연구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원고 접수, 심사,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
  6.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⑧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## 제8조 (연구부장)

- ① 인문사회분야 중 세부 학문 분야의 연구를 관리할 다음 각 호의 연구부장을 둘 수 있다.
  1. 어문학연구부장
  2. 사회과학연구부장
  3. 지역사회연구부장
  4. 예술분야연구부장
- ② 각 연구부장은 관련 분야의 학술 연구를 담당하여 관리한다.
- ③ 각 연구부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④ 각 연구부장의 사무실은 교수연구실로 한다.

#### 제9조 (연구원)

- ① 연구소의 연구원은 본교에 소속된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 중 인문사회분야에 관련된 교원으로 한다. <개정2012.07.16.>
-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의 겸임교수를 포함한 외부 인사를 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10조 (직원)

연구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을 둔다.

### 제3장 재 정

제11조 (수입)

연구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확보하여 집행한다.

- ① 대학이 배정하여 지원하는 연구 활동비, 업무추진비 등 지원금
- ② 연구 수탁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지원된 연구비
- ③ 지역사회 단체나 협력기관(산업체) 등의 지원금
- ④ 기타 기부금이나 찬조금

제12조 (지출)

연구소의 지출은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.

제13조 (예산 및 결산)

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 회계 연도에 따르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 (경과조치)

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
제2조 (시 행 일)

본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3조 (경과조치)

본 규정 전에 제정되어 시행중인 언어연구소 규정, 지역사회연구소 규정, 출판문화연구소 규정은 본 규정의 시행일에 자동 폐기된다.

#### 부 칙

제1조 (시 행 일)

본 규정은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